2023-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결과 보고

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

제14장 회칙 개정

제66조(발의)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대표자 회의 재적 대표자 1/5이상의 발의
-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
- ③ 회원총수의 1/500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발의

제67조(의결)

회칙 개정이 발의 시 전학대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,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열고 재적 대표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표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8조(공포)

전학대회 의장은 의결 3일 이내에 공포한다.

2023년 04월 06일 19시 소집된 2023-1학기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구분		안건명	표결 인원	찬성	반대	기권	결과
의 결 안 건	1	각 단위별 학생회비 확정	292	287	0	5	가결
	2	1학기 총학생회비 예산안 확정	294	288	1	5	가결
	3	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 업무 조정의 건	285	181	57	47	가결
	4	총학생회 일부 산하위원회 운영 규정 변경의 건	247	177	21	49	가결
	5	총학생회 회칙 제3조, 제4조 일부 개정의 건	213	213	0	0	가결
	6	중앙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개정을 회칙 전체로 진행 함에 대한 동의*	210	205	0	5	가결
	7	총학생회 회칙 제30조 일부 개정의 건	216	176	19	21	가결
	8	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개정 (세부 1번, 8번 안건 제외)	204	196	0	8	가결
	9	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세칙 전 체로 진행함에 대한 동의*	203	200	1	2	가결
	10	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	206	206	0	0	가결

*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원안 다.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개정에 대한 회칙 전체 묶음 의결 *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원안 라.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세칙 전체 묶음 의결

2023-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5대 총학생회장 류동현